

협력약정업체 자격 갱신심사 시행 안내

협력업체와의 협력약정 유효기간(4년)이 2018.7.7부로 만료됨에 따라 표준협력약정서 제8조(유효기간) 및 당사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제20조(협력약정체결, 등록 및 유효기간)에 의거 유효기간 만료 협력약정업체를 대상으로 자격 갱신심사를 시행하여 적격업체와 협력약정 갱신을 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업체 : 협력약정서 만료 예정 업체 (협력약정서 유효기한: 2018.7.7)

2. 기본자격조건

-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유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0,-) 이상인 자
- 나. 각 모집분야별로 요구되는 자격을 보유한 자(붙임 1 참조)
- 다. 우리회사 퇴직 임.직원 중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3. 적격업체 선정 기준

- 가. 기본자격조건을 보유한 자로서 평가결과 평가총점이 80점 이상이면서 품질활동 능력평가 배점의 80% 이상인 자
 - * 등록신청후 부적격일 경우, 향후 6개월간 해당 분야 재등록 제한
- 나. 우리회사와 협력관계 유지에 부적합 사항이 없는 자
- 다. 기타사항
 - 동일 업체가 2개 이상 분야에 협력약정 되어 있는 경우, 보유 기술인력은 ‘공통/원자력/플랜트/원자로’ 활용 분야간 교차 등록 신청은 가능하나, 동일 활용분야 내에서는 각각의 분야에 중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없음
(예시) 원자력 배관:홍길동 & 플랜트 배관:홍길동 등록(가능)
원자력 배관:홍길동 & 원자력 기계:홍길동 등록(불가)
 - 위 갱신심사에 의하여 협력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사업물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4. 접수기간 및 방법

- 가. 접수기간 : 2018.04.12. 13:00 ~ 2018.04.27. 15:00
- 나. 접수방법 : 우리회사 계약관리시스템(K-CSM)을 통한 온라인 접수
(URL주소 : <https://p-manager.kepco-enc.com/splogin.jsp>)

5. 제출서류(붙임3 참조)

- 가. 협력업체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및 관련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필요업체에 한해 협력업체 추천서 첨부(별지 제8호)**
- 나. 신청업체 회사 일반현황(별지 제2호 및 관련서류)
 - 회사조직 기구표, 임원현황 및 대표자 이력서, 제재처분 확인서 첨부
- 다. 각 갱신(협력)분야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 라. 한국전력기술(주)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별지 제3호)
- 마. 기업신용평가서
- 바. 기술자 보유현황 총괄표 및 평가표(별지 제4호 및 관련서류)
- 사. 사업수행실적 현황 및 평가표(별지 제5호, 제6호 및 관련서류)
- 아. 품질활동능력 현황 및 증빙서류(별지 제7호 및 관련서류)
- 자. 영업양수도과 같은 경우 관련 서류 일체(영업양수도계약서/법인등기부등본 등)

※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2018. 4. 27.) 기준 유효하여야 함

6. 추진일정

- 가. 등록신청서 접수 : 2018.04.12.13:00 ~ 2018.04.27.15:00
- 나. 신청서류 평가 : 2018.04.30. ~ 2018.05.21.
- 다. 평가 확정 및 적격업체 선정 : 2018.05.18. ~ 2018.06.04.
- 라. 협력약정 체결 : 2018.06.05. ~ 2018.06.12.

※ 추진일정은 우리회사 사정에 의해 조정 가능함

7. 협약기간 : 협약약정 갱신일(2018.7.8.)로부터 2022.6.30.까지(4년)

- ※ 협약기간 동안 매년 정기평가를 통해 협약기간이 유지되며, 평가결과에 대해 혜택 또는 제재 있음
 - 혜택 :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개별 입찰시 1년간 PQ 가점(1점)
 - 제재 : 부적격업체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협력약정 해지 또는 개별 입찰시 1년간 PQ 감점(1점)

8. 기타

- 가. 협력업체 자격 갱신대상 업체는 협력업체 자격 갱신심사 시행 안내문,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및 협력업체윤리행동강령 등의 기준을 반드시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나. 제출서류는 붙임 3의 제출서류 목록 및 작성양식에 의거하여 등록 신청분야별로 우리회사 계약관리시스템(K-CSM)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제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심사제외 및 등록취소 됩니다.

- 라.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는 협력업체 자격 갱신심사 신청을 하였던 우리회사 계약관리시스템(K-CSM)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마. 분야별 선정방법, 신청시 구비서류 및 평가기준 등은 우리회사 홈페이지 (<http://www.kepco-enc.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총 괄 : 계약실 계약총괄팀 윤주민 차장(054-421-5892)
- 등록신청분야 : 분야별 소관부서 문의담당직원(붙임 4 참조)

- 붙임 : 1. 갱신대상분야 및 자격요건 1부.
2. 업체평가기준 1부.
3. 제출서류 목록 및 작성양식 1부.
4. 분야별 소관부서 문의담당직원 현황 1부.

2018. 04.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사장

갱신대상분야 및 자격요건

1. 공통 활용분야

기술분야	협력분야	자격요건	소관부서
품 질	품질검사	- 기계부문의 용접분야, 건설부문의 품질시험분야, 산업부문의 생산관리분야, 원자력부문의 비파괴검사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품질안전환경 담당부서
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인력(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고급기술자 1인 이상) 보유자	건설사업관리 담당부서
정 보	정보기술	- 정보통신부문의 정보관리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이거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기술 담당부서

< 비 고 >

- 자격요건 중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해당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를 말하며,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동일 기술범위에 등록된 기술사 사무소를 포함

2. 원자력 활용분야

기술분야	협력분야	자격요건	소관부서
원 자 력	원자력발전	- 원자력부문의 원자력·방사선 관리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원자력발전 담당부서
기 계	기계설계	-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분야 및 설비부문의 설비 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기계설계 담당부서
	소방설비	- 산업부문의 소방방재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자	
배 관	배관설계	-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분야 및 설비부문의 설비 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배관설계 담당부서
전 기	전기설계	- 전기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 또는 전문1종)자	전기설계 담당부서
계 측	계측제어	- 전기부문의 전기전자응용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계측제어 담당부서
건 축	건축설계	-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자 또는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필증을 보유한 자	건축 담당부서

기술분야	협력분야	자격요건	소관부서
토 목	토목구조	- 건설부문의 구조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토목기술 담당부서
	육상측량	- 건설부문의 측량·지적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자	
	수로측량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한 수로사업자	
	도로 및 공항	- 건설부문의 도로 및 공항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토질 및 기초	- 건설부문의 토질·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질 및 지반	- 건설부문의 토질·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항만 및 해안	- 건설부문의 항만 및 해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 비 고 >

- 자격요건 중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해당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를 말하며,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동일 기술범위에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를 포함

3.원자로 활용분야

기술분야	협력분야	자격요건	소관부서
기 계	기계설계	-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분야 및 설비부문의 설비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기계설계 담당부서
계 측	원전 계측제어	- 전기부문의 전기전자응용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계측제어 담당부서

< 비 고 >

- 자격요건 중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해당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를 말하며,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동일 기술범위에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를 포함

4. 플랜트 활용분야

기술분야	협력분야	자격요건	소관부서
기 계	기계설계	-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분야 및 설비부문의 설비 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기계설계 담당부서
	공기조화 및 냉난방 설계	- 설비 부문의 설비분야 또는 - 기술사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소방설비	- 산업부문의 소방방재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자	
배 관	배관설계	-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분야 및 설비부문의 설비 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배관설계 담당부서
전 기	전기설계	- 전기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 또는 전문1종)자	전기설계 담당부서
계 측	계측제어	- 전기부문의 전기전자응용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계측제어 담당부서
건 축	건축설계	-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자 또는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필증을 보유한 자	건축 담당부서
토 목	토목구조	- 건설부문의 구조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토목기술 담당부서
	육상측량	- 건설부문의 측량·지적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자	
	수로측량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한 수로사업자	
	도로 및 공항	- 건설부문의 도로 및 공항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토질 및 기초	- 건설부문의 토질·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질 및 지반	- 건설부문의 토질·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항만 및 해안	- 건설부문의 항만 및 해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상하수도	- 건설부문의 상하수도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환 경	환경현황조사	- 환경부문의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자	환경기술 담당부서
	해 양	- 해양·수산부문의 해양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환경 및 화학설비 설계	- 환경부문의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분야 또는 화학부문의 화공분야 중 1개 이상의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 비 고 >

- 자격요건 중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해당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를 말하며,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동일 기술범위에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를 포함

업체평가기준(설계엔지니어링 부문)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분 야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한도	비 고
경영상태	신 용 도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5	
수행능력	인력보유상태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로 평가	35	재직1년 이상 대상 한정
	사업수행실적	최근 5년 이내 협력분야별 동일 및 유사역무 용역수행실적으로 평가	15	도급수행실적 한정
	품질활동능력	품질조직, 인력, 품질시스템 수립 및 운영, 최근 2년간 대·내외 교육실적	15	
공통	감점	우리회사로부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우리회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 고발한 경우 등	0 ~ -9	
계	-	-	100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가. 일반사항

- ①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 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② 보유기술자 평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기준에 따라 기술자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협력분야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법률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력서등에 의해 경력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④ 용역수행실적은 해당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 및 이의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⑤ 평가자는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심사할 수 있다.

나. 신용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① 신용도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유효)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의 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신용평가등급	AAA	AA (+, 0, -)	A (+, 0, -)	BBB (+, 0, -)	BB (+, 0, -)	BB미만 (소관부서장 추천)	BB미만
평 가 점 수	35	33	31	29	27	25	-

③ 신용평가 기준 미만이나 협력업체 추천서를 통하여 신청한 업체에 한해 평가시에는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 등급의 점수(25점)를 적용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⑤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위 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로서 이에 대응하는 회사채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 인력 보유상태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의 비율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150% 이상	150% 미만 120% 이상	120%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70% 이상	70% 미만 50% 이상	50% 미만
평가점수	35	32	29	26	23	0

②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산 식 = 보유인력 계량점수 ÷ 표준인력 계량점수 × 100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 보유인력 및 표준인력 계량점수 = ∑(등급별 인원 × 등급별 계수)

< 예 시 >

구 분	계 수	표준인력	보유인력	인력보유비율 및 평점
특급기술자	10	1	1	- 인력보유비율 = 106.67% (= 64 ÷ 60 × 100) - 평가점수 = 29점
고급기술자	8	2	2	
중급기술자	6	3	3	
초급기술자	4	4	5	
계량점수	-	60	64	

③ 협력분야별 표준인력(기술등급, 계수, 소요인력)은 별첨 1에 따른다.

④ 동일한 업체가 동일한 활용분야 내에 2개 이상의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등록신청을 할 경우 해당 업체의 동일 기술자는 각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다만, 활용분야가 다른 경우에만 교차 등록 가능하다.

(예시) 원자력 배관:홍길동 & 플랜트 배관:홍길동 등록(가능)
원자력 배관:홍길동 & 원자력 기계:홍길동 등록(불가)

⑤ 보유인력은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라. 사업수행실적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최근 5년간 당해 협력분야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예 시>

구 분	평 점				
건수기준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7.5	6.8	6.1	5.4	4.7
금액기준	10억 이상	10억 미만 ~ 7 억 이상	7억 미만 ~ 5억 이상	5억 미만 ~ 3억 이상	3억 미만
	7.5	6.8	6.1	5.4	4.7

※ 실적은 접수마감일 기준 준공일이 최근 5년 이내의 준공된 것만을 실적으로 인정

② 용역수행실적(건수 및 금액)은 동일. 유사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건수(금액) = $\sum(\text{건수(금액)} \times \text{역무보정계수})$
- 역무보정계수 : 동일역무 1.0, 유사역무 : 0.7
- 계산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협력분야별 건수, 금액, 보정계수 및 동일/유사역무의 구분기준 등은 별첨 1에 따른다.

④ 사업수행실적은 도급수행실적인 경우에 한한다.(파견근로실적 불인정)

마. 품질활동능력 평가는 별첨 2에 따른다.

바.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감점을 한다.

- ① 우리회사로부터 부정당제재를 받은 자 또는 우리회사가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행 지체,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익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에 대해선 감점한다. 그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회사 적격심사 신인도 기준을 적용한다.
- ② 우리회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고발을 한 자(회사 또는 법인에 한정)는 해당 건당 1점씩 최대 2점을 감점한다. 다만, 우리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소.고발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 가·감점 항목의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별첨 1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및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1.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공통 활용분야)

협력분야	등 급 계 수	기술사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표준 점수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표준 점수	표준 점수 합계	비 고
		4	3	2	1.5	1		1.5	1	0.5			
품질검사		-	1	2	3	2	13.5	-	-	-	-	13.5	초급기술자이상
건설사업관리		-	1	1	2	2	10	-	-	-	-	10	상동
정보기술		-	1	2	3	4	15.5	-	-	-	-	15.5	상동

(원자력 활용분야)

협력분야	등 급 계 수	기술사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표준 점수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표준 점수	표준 점수 합계	비 고
		4	3	2	1.5	1		1.5	1	0.5			
원자력발전		-	1	2	3	4	15.5	-	-	-	-	15.5	초급기술자이상
기계설계		-	1	1	2	4	12	1	3	-	4.5	16.5	
소방설비		1	1	2	2	4	18	-	-	-	-	18	초급기술자이상
배관설계		-	1	2	3	4	15.5	4	4	-	10	25.5	
전기설계		1	1	2	2	2	16	1	2	2	4.5	20.5	
계측제어			1	2	2	1	11	-	1	1	1.5	12.5	
건축설계		-	1	2	3	4	15.5	-	-	-	-	15.5	초급기술자이상
토목구조		1	1	2	3	4	19.5	-	-	-	-	19.5	상동
육상측량		-	1	2	2	2	12	-	1	-	1	13	
수로측량		-	1	2	2	2	12	-	1	-	1	13	
도로 및 공항		1	1	2	3	4	19.5	-	-	-	-	19.5	초급기술자이상
토질 및 기초		1	1	2	3	4	19.5	-	-	-	-	19.5	상동
지질 및 지반		1	1	2	3	4	19.5	-	-	-	-	19.5	상동
항만 및 해안		1	1	2	3	4	19.5	-	-	-	-	19.5	상동

(원자로 활용분야)

등 계 수 협력분야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표준 점수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표준 점수	표준 점수 합계	비 고
	4	3	2	1.5	1		1.5	1	0.5			
기계설계	-	1	1	2	2	10	-	-	-	-	10	초급기술자이상
원전 계측제어	1	1	2	2	2	16	1	1	2	3.5	19.5	

(플랜트 활용분야)

등 계 수 협력분야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표준 점수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표준 점수	표준 점수 합계	비 고
	4	3	2	1.5	1		1.5	1	0.5			
기계설계	-	1	1	2	3	11	1	2	-	3.5	14.5	
공기조화 및 냉난방 설계	-	1	1	2	3	11	1	2	-	3.5	14.5	
소방설비	1	1	2	2	3	17	-	-	-	-	17	초급기술자이상
배관설계	-	1	2	2	3	13	3	3	-	7.5	20.5	
전기설계	1	2	2	2	2	19	1	2	2	4.5	23.5	
계측제어	-	1	1	1	2	8.5	-	-	1	0.5	9.0	
건축설계	-	1	2	2	2	12	-	-	-	-	12	초급기술자이상
토목구조	1	1	2	2	2	16	-	-	-	-	16	상동
육상측량	-	1	2	2	2	12	-	1	-	1	13	
수로측량	-	1	2	2	2	12	-	1	-	1	13	
도로 및 공항	1	1	2	2	2	16	-	-	-	-	16	초급기술자이상
토질 및 기초	1	1	2	2	2	16	-	-	-	-	16	상동
지질 및 지반	1	1	2	2	2	16	-	-	-	-	16	상동
항만 및 해안	1	1	2	2	2	16	-	-	-	-	16	상동
상하수도	1	1	2	2	2	16	-	-	-	-	16	상동
환경현황조사	1	1	2	3	4	19.5	-	-	-	-	19.5	상동
해양	1	1	2	3	4	19.5	-	-	-	-	19.5	상동
환경 및 화학 설비설계		1	1	2	4	12	-	-	-	-	12	상동

※ 비고 : 기능사가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 기술자와 기능사를 각각 평가하고, 기술자와 기능사 표준점수의 합계에서 각각의 표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기술자와 기능사의 평점을 계산하여 합산한 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함.

2. 협력분야별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가. 건수기준

(공통 활용분야)

등급 평점 협력분야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7.5	6.8	6.1	5.4	4.7	
품질검사	5건 이상	5건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3건 이상	3건미만~ 2건 이상	2건미만	
건설사업관리	5건 이상	5건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3건 이상	3건미만~ 2건 이상	2건미만	
정보기술	5건 이상	5건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3건 이상	3건미만~ 2건 이상	2건미만	

(원자력 활용분야)

등급 평점 협력분야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7.5	6.8	6.1	5.4	4.7	
원자력발전	10건 이상	10건미만~ 8건 이상	8건미만~ 6건 이상	6건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기계설계	5건 이상	5건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3건 이상	3건미만~ 2건 이상	2건미만	
소방설비	10건 이상	10건미만~ 8건 이상	8건미만~ 6건 이상	6건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배관설계	10건 이상	10건미만~ 8건 이상	8건미만~ 6건 이상	6건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전기설계	10건 이상	10건미만~ 8건 이상	8건미만~ 6건 이상	6건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계측제어	5건 이상	5건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3건 이상	3건미만~ 2건 이상	2건미만	
건축설계	10건 이상	10건미만~ 8건 이상	8건미만~ 6건 이상	6건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토목구조	15건 이상	15건미만~ 12건 이상	12건미만~ 9건 이상	9건미만~ 6건 이상	6건미만	
육상측량	15건 이상	15건미만~ 12건 이상	12건미만~ 9건 이상	9건미만~ 6건 이상	6건미만	
수로측량	15건 이상	15건미만~ 12건 이상	12건미만~ 9건 이상	9건미만~ 6건 이상	6건미만	
도로 및 공항	15건 이상	15건미만~ 12건 이상	12건미만~ 9건 이상	9건미만~ 6건 이상	6건미만	
토질 및 기초	15건 이상	15건미만~ 12건 이상	12건미만~ 9건 이상	9건미만~ 6건 이상	6건미만	
지질 및 지반	15건 이상	15건미만~ 12건 이상	12건미만~ 9건 이상	9건미만~ 6건 이상	6건미만	
항만 및 해안	10건 이상	10건미만~ 8건 이상	8건미만~ 6건 이상	6건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원자로 활용분야)

등급 평점 협력분야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7.5	6.8	6.1	5.4	4.7	
기계설계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원전계측제어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플랜트 활용분야)

등급 평점 협력분야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7.5	6.8	6.1	5.4	4.7	
기계설계	5건 이상	5건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3건 이상	3건미만~ 2건 이상	2건미만	
공기조화 및 냉난방 설계	5건 이상	5건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3건 이상	3건미만~ 2건 이상	2건미만	
소방설비	10건 이상	10건미만~ 8건 이상	8건미만~ 6건 이상	6건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배관설계	10건 이상	10건미만~ 8건 이상	8건미만~ 6건 이상	6건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전기설계	10건 이상	10건미만~ 8건 이상	8건미만~ 6건 이상	6건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계측제어	5건 이상	5건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3건 이상	3건미만~ 2건 이상	2건미만	
건축설계	5건 이상	5건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3건 이상	3건미만~ 2건 이상	2건미만	
토목구조	15건 이상	15건미만~ 12건 이상	12건미만~ 9건 이상	9건미만~ 6건 이상	6건미만	
육상측량	15건 이상	15건미만~ 12건 이상	12건미만~ 9건 이상	9건미만~ 6건 이상	6건미만	
수로측량	15건 이상	15건미만~ 12건 이상	12건미만~ 9건 이상	9건미만~ 6건 이상	6건미만	
도로 및 공항	15건 이상	15건미만~ 12건 이상	12건미만~ 9건 이상	9건미만~ 6건 이상	6건미만	
토질 및 기초	15건 이상	15건미만~ 12건 이상	12건미만~ 9건 이상	9건미만~ 6건 이상	6건미만	
지질 및 지반	15건 이상	15건미만~ 12건 이상	12건미만~ 9건 이상	9건미만~ 6건 이상	6건미만	
항만 및 해안	10건 이상	10건미만~ 8건 이상	8건미만~ 6건 이상	6건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상하수도	10건 이상	10건미만~ 8건 이상	8건미만~ 6건 이상	6건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환경현황조사	10건 이상	10건미만~ 8건 이상	8건미만~ 6건 이상	6건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해양	10건 이상	10건미만~ 8건 이상	8건미만~ 6건 이상	6건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환경 및 화학 설비설계	5건 이상	5건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3건 이상	3건미만~ 2건 이상	2건미만	

나. 금액기준
(공통 활용분야)

(VAT 포함)

등급 평점 협력분야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7.5	6.8	6.1	5.4	4.7	
품질검사	30억 이상	30억미만~ 21억 이상	21억미만~ 15억 이상	15억미만~ 9억 이상	9억미만	
건설사업관리	3억 이상	3억미만~ 2.5억미만	2.5억미만~ 2억미만	2억미만~ 1.5억미만	1.5억미만	
정보기술	10억 이상	10억미만~ 7억 이상	7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3억 이상	3억미만	

(원자력 활용분야)

(VAT 포함)

등급 평점 협력분야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7.5	6.8	6.1	5.4	4.7	
원자력발전	10억 이상	10억미만~ 7억 이상	7억미만~ 50이상	50미만~ 3억 이상	3억미만	
기계설계	10억 이상	10억미만~ 7억 이상	7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3억 이상	3억미만	
소방설비	10억 이상	10억미만~ 7억 이상	7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3억 이상	3억미만	
배관설계	20억 이상	20억미만~ 15억 이상	15억미만~ 10억 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전기설계	25억 이상	25억미만~ 20억 이상	20억미만~ 15억 이상	15억미만~ 10억 이상	10억미만	
계측제어	5억 이상	5억미만~ 4억 이상	4억미만~ 3억 이상	3억미만~ 2억 이상	2억미만	
건축설계	10억 이상	10억미만~ 7억 이상	7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3억 이상	3억미만	
토목구조	10억 이상	10억미만~ 7억 이상	7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3억 이상	3억미만	
육상측량	10억 이상	10억미만~ 7억 이상	7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3억 이상	3억미만	
수로측량	10억 이상	10억미만~ 7억 이상	7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3억 이상	3억미만	
도로 및 공항	15억 이상	15억미만~ 12억 이상	12억미만~ 9억 이상	9억미만~ 6억 이상	6억미만	
토질 및 기초	10억 이상	10억미만~ 7억 이상	7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3억 이상	3억미만	
지질 및 지반	10억 이상	10억미만~ 7억 이상	7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3억 이상	3억미만	
항만 및 해안	15억 이상	15억미만~ 12억 이상	12억미만~ 9억 이상	9억미만~ 6억 이상	6억미만	

(원자로 활용분야)

(VAT 포함)

등급 평점 협력분야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7.5	6.8	6.1	5.4	4.7	
기계설계	10억 이상	10억 미만 ~ 7 억 이상	7억 미만 ~ 5억 이상	5억 미만 ~ 3억 이상	3억 미만	
원전계측제어	7억이상	7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플랜트 활용분야)

(VAT 포함)

등급 평점 협력분야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7.5	6.8	6.1	5.4	4.7	
기계설계	10억이상	10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공기조화 및 냉난방 설계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소방설비	10억이상	10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배관설계	20억이상	20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전기설계	20억이상	20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계측제어	3억이상	3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1억이상	1억미만~ 0.5억이상	0.5억미만	
건축설계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토목구조	10억이상	10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육상측량	10억이상	10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수로측량	10억이상	10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도로 및 공항	15억이상	15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9억이상	9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토질 및 기초	10억이상	10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지질 및 지반	10억이상	10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항만 및 해안	15억이상	15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9억이상	9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상하수도	10억이상	10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환경현황조사	15억이상	15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9억이상	9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해양	10억이상	10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환경 및 화학 설비설계	3억이상	3억미만~ 2.5억미만	2.5억미만~ 2억미만	2억미만~ 1.5억미만	1.5억미만	

다. 협력분야별 동일용역 및 유사용역 범위

(공통 활용분야)

역무구분 계 수 협력분야	최근 5년간 해당 협력분야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1.0	최근 5년간 해당 협력분야와 유사한 종류의 용역실적 0.7
품질검사	발전소 기자재 검사업무	산업플랜트 검사업무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1항의 제1호, 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1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정보기술	발전소 설계관련 정보기술 업무	기타 건설사업 설계관련 정보기술 업무

(원자력 활용분야)

역무구분 계 수 협력분야	최근 5년간 해당 협력분야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1.0	최근 5년간 해당 협력분야와 유사한 종류의 용역실적 0.7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 원자력 계통설계, 방사선방호 설계, 안전해석설계, 방사성폐기물처리설계 업무	기타 원자력 관련 설계업무
기계설계	원자력 발전소 기계분야 계통설계 또는 HVAC 설계업무	계통설계 및 HVAC설계를 제외한 원자력발전소 기계분야 설계업무
소방설비	원자력발전소 소방시설 설계 업무	화력발전소 소방시설 설계 업무
배관설계	원자력발전소 배관분야 설계업무	화력발전소 또는 산업플랜트 배관분야 설계업무
전기설계	원자력발전소 전기분야 설계업무	화력, 수력발전소 또는 산업플랜트 전기분야 설계업무
계측제어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분야 설계업무	화력, 수력발전소 또는 산업플랜트 계측제어분야 설계업무
건축설계	발전소 건축설계업무	산업플랜트 건축설계업무
토목구조	발전소 토목구조물 조사·시험·진단·설계· 계획에 관한 업무	기타 토목구조물 조사·시험·진단·설계· 계획에 관한 업무
육상측량	측량, 지형공간정보,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촬영 등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
수로측량	수심측량, 지층탐사, 해저지질조사, 해저지형정보, 해도제작	-
도로 및 공항	도로 및 교통, 도로구조물, 도로부대 시설, 공항계획 및 공항부대시설 관련 설계업무	-
토질 및 기초	발전소 토질 및 기초 관련 설계/조사 업무	기타시설 관련 토질 및 기초 관련 설계/조사 업무
지질 및 지반	발전소 지형·지질구조·지하수 부존상황과 지반 구성물의 성질 분석 등 지질과 지반 조사 관련 업무	기타시설 관련 지형·지질구조·지하수 부존상황과 지반 구성물의 성질 분석 등 지질과 지반조사 관련 업무
항만 및 해안	발전소 관련 항만계획, 외곽시설, 접안 시설, 입항교통시설, 보안신호, 하역시설 및 해안의 보전, 기타 항만과 해안에 관한 업무	기타시설 관련 항만계획, 외곽시설, 접안시설, 입항교통시설, 보안신호, 하역시설 및 해안의 보전, 기타 항만과 해안에 관한 업무

(원자로 활용분야)

역무구분 계 수	최근 5년간 해당 협력분야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최근 5년간 해당 협력분야와 유사한 종류의 용역실적
협력분야	1.0	0.7
기계설계	발전소 기기 및 구조물 설계 및 해석	기기 및 구조물 설계 및 해석
원전 계측제어	발전소 전기분야 설계역무	산업플랜트 전기분야 설계 역무

(플랜트 활용분야)

역무구분 계 수	최근 5년간 해당 협력분야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최근 5년간 해당 협력분야와 유사한 종류의 용역실적
협력분야	1.0	0.7
기계설계	발전소 기계분야 계통설계 또는 설계역무	산업플랜트 기계분야 계통설계 또는 설계역무
공기조화 및 냉난방 설계	발전소 공기조화 및 냉난방 설계	산업플랜트 배관분야 설계역무
소방설비	발전소 소방시설 설계 업무	발전소 소방시설 감리업무
배관설계	발전소 배관분야 설계역무	산업플랜트 배관분야 설계역무
전기설계	석탄/복합화력 발전소 전기분야 설계역무	기타 발전소, 기계설비용 전기설계 및 산업플랜트 전기분야 설계역무
계측제어	발전소(지역난방 포함) 계측제어분야 설계역무	산업플랜트 계측제어분야 설계역무
건축설계	발전소 건축설계역무	산업플랜트 건축설계역무
토목구조	발전소 토목구조물 조사·시험·진단·설계·계획에 관한 역무	기타 토목구조물 조사·시험·진단·설계·계획에 관한 역무
육상측량	측량, 지형공간정보,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촬영 등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
수로측량	수심측량, 지층탐사, 해저지질조사, 해저지형정보, 해도제작	-
도로 및 공항	도로 및 교통, 도로구조물, 도로부대 시설, 공항계획 및 공항부대시설 관련 설계역무	-
토질 및 기초	발전소 토질 및 기초 관련 설계/조사 역무	기타시설 관련 토질 및 기초 관련 설계/조사 역무
지질 및 지반	발전소 지형·지질구조·지하수 부존상황과 지반 구성물의 성질 분석 등 지질과 지반 조사 및 설계역무	기타시설 관련 지형·지질구조·지하수 부존상황과 지반 구성물의 성질 분석 등 지질과 지반조사 및 설계역무
항만 및 해안	발전소 관련 항만계획, 외곽시설, 접안 시설, 입항교통시설, 보안신호, 하역시설 및 해안의 보전, 기타 항만과 해안에 관한 역무	기타시설 관련 항만계획, 외곽시설, 접안시설, 입항교통시설, 보안신호, 하역시설 및 해안의 보전, 기타 항만과 해안에 관한 역무
상하수도	발전소 관련 상수·공업용수계획, 취·배수·정수·수질 및 기타 상수도과 수질관리, 하수도계획, 하수·폐수·오물 처리, 기타 하수도 하천 및 해양의 수질보전 역무	기타시설물 관련 상수·공업용수계획, 취·배수·정수·수질 및 기타 상수도과 수질관리, 하수도계획, 하수·폐수·오물 처리, 기타 하수도 하천 및 해양의 수질 보전 역무
환경현황조사	에너지 개발분야 환경영향평가	기타분야 환경영향평가
해양	발전소 해양 및 해양생태계 관련 조사, 수치실험 등의 역무	발전소 이외 사업의 해양 및 해양생태계 관련조사, 수치실험 등의 역무
환경 및 화학 설비설계	발전소 환경, 화학설비 및 기계분야 계통설계	산업플랜트 환경 및 기계분야 설계 업무

비고 : 모든 실적은 준공실적에 한함

별첨 2

품질활동능력 평가 기준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조 직 및 인 력	품질조직	2.0	평가요소	평가 세부사항				
			품질전담조직	유 (조직도 제출)		무 (조직도 제출)	무 (조직도 미제출)	
				품질조직 독립성	유	무	무	무
				평점	2.0 (100%)	1.8 (90%)	1.0 (50%)	0.0 (0%)
	품질요원 자격부여	1.0	○품질감사자-유 : 1.0 (100%) ○품질감사자-무, 품질검사자/시험자(필요시)-유 : 0.5 (50%) ○품질감사자-무, 품질검사자/시험자-무 : 0.0 (0%)					
시 스 템 수 립	품질시스템	8.0	○품질시스템 인증서 보유 : 8.0 (100%)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서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우수 : 6.4 (80%)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양호 : 5.6 (70%) - 절차서/표준 수립상태-보통 : 4.8 (60%) - 절차서/표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0.0 (0%)					
	품질시스템 도입경과	1.0	○3년 이상 : 1.0 (100%) ○1년초과 3년 미만 : 0.9 (90%) ○1년 이하 : 0.8 (80%)					
	대외감사/ 심사 수검실 적(최근 2년)	1.0	○2회 이상 : 1.0 (100%) ○2회 미만 : 0.9 (90%) ○없 음 : 0.8 (80%)					
대 내 · 외 교 육 훈 련	대내교육 실적 (최근 2년)	1.0	○대내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 품질보증교육 6시간 이상 : 1.0 (10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이상 : 0.8 (8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미만 : 0.6 (60%) - 기타 교육실적 : 0.5 (50%) ○대내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 0 (0%)					
	대외교육 실적 (최근 2년)	1.0	○대외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 품질보증교육 6시간 이상 : 1.0 (10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이상 : 0.8 (80%) - 품질보증교육 4시간 미만 : 0.6 (60%) - 기타교육실적 : 0.5 (50%) ○대외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 0 (0%)					
합 계		15	-					

제출서류 목록 및 작성양식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서식)
총괄	1	-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신청자 관계기관	별지 제1호 -
	2	- 회사 일반현황 · 회사조직 기구표, 임원현황 및 대표자 이력서 첨부 · 제재처분 확인서	신청자 신청자 관계기관	별지 제2호 - -
	3	- 협약분야별 자격요건 증빙서류	관계기관	-
	4	- 한국전력기술(주) 퇴직자 고용현황 (미고용시에도 제출하여함, 미제출시 심사 제외)	신청자	별지 제3호
경영상태	5*	- 기업신용평가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
인력보유 상 태	6**	- 기술자 보유현황 총괄표 및 평가표 ·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단, 고용보험가입 비대상은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 경력 관련 증빙서류(경력확인서 포함) · 기타 필요시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신청자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련회사 관계기관	별지 제4호
사업수행 실 적	7	- 사업수행실적 현황 및 평가표 - 용역이행실적 평가 관계 증명서류	신청자 관계기관 및 발주처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품질활동 능 력	8	- 품질활동능력 현황 · 품질활동능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신청자 관계기관	별지 제7호 -
기 타	9	- 협력업체 추천서	우리회사	별지 제8호

- 비 고

* 기업신용평가서 : 기업신용평가서는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한정하지 않음

** 고용보험가입증명서 : 고용보험가입 비대상 또는 고용보험가입 증명서 제출 곤란시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가입증명서로 대체 제출 가능(기술자 보유현황 확인용)

[별지 제1호]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					
업 체 명			등록을 희망 하는 분야		
사 업 장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설립 년월일		
	주민등록 번 호	123456-1XXXXXX	주요사업범위		
전 화 (FAX)	()		사 용 인 감		
자 본 금					
기업형태	법인 , 개인		인력 보유 현황	기술자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기능공	명
특기사항					

상기에 기술한 내용이 이상 없으며 귀사에서 정한 제반규정의 제 조항을 수락하고 별첨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귀 하

[별지 제3호]

한국전력기술(주)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 협력분야 :

1. 상기 협력분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전력기술(주)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5.4.27 이후 한국전력기술(주) 퇴직자 고용현황>

성 명	생년월일	퇴직당시 직급	고용일자	현 직위	비 고
홍길동	2000.01.01	임 원		-	-
		수석급			
		주임급			

※ 퇴직당시 직급 : 한국전력기술(주) 퇴직시 직급을 의미함

2. 한국전력기술(주) 퇴직사원에 대한 고용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귀사 심사 평가기준 (협력업체모집심사, 적격심사, PQ심사, 제안서심사 등)의 신인도 평가방침을 따르겠습니다.

귀사와의 업무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및 협력약정 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별지 제4호]

기술자 보유 현황 총괄표 및 평가표(접수마감일 기준 재직 1년 대상 평가)

(신청업체 작성부분)									(한기 작성 부분)			
업 체 명									소 속			
신청분야		_____활용분야 _____기술분야 _____협력분야							직급(직위) 및 성명		(인)	

연번	업체 신청내용(신청업체 작성 부분)								사정결과(한기 작성 부분)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기술분야 전체경력 (년 월)	기술자등급	자격기준 (자격증/학력 /위탁기관)	경력기간	기술자등급	
					종 류	취득일						
1	홍길동	'55.01.01	명문대(학사)	기계	-	-	31년 2월	특급기술자				
2	AAA	'67.01.01	명문대(학사)	기계			20년 1월	고급기술자				
3	BBB	'70.01.02	명문고	건축			10년 2월	중급기술자				

비 고

1.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나, 경력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기관 등의 확인된 이력서등에 의함
2. 참여기술자의 기술자 등급 평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름. 단, 등록 신청분야별로 적용하는 법률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법률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름.
3. 참여기술자는 협력업체 신청시 우리회사 계약관리시스템(K-CSM)에 별도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하여 상기 별지 제4호 기술자 보유 현황 총괄표 및 평가표에 기재된 인원과 상이시에는 우리회사 계약관리시스템(K-CSM)에 등록된 참여기술자만 평가함.

첨부서류 : 1. 보유기술자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가입증명서(단, 고용보험가입 비대상 또는 제출 곤란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2. 참여기술자의 자격, 등급, 경력 및 실적은 해당 위탁관련 업무수행기관(협회)의 확인서 첨부
 (단, 경력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직기관 등의 확인된 이력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입증 서류 첨부)

[별지 제5호]

사업수행실적 현황(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준공) 및 평가표

(신청업체 작성부분)					(한기 작성 부분)			
업 체 명					소속			
신청분야		_____활용분야 _____기술분야 _____협력분야			직급(직위) 및 성명		(인)	
No	업체 신청내용				사정결과			비고
	용역명	동일/유사	적용계수(건수)	계약금액(천원)	동일/유사	적용계수(건수)	적용금액(천원)	
1	종합설계 00역무 도면 작성	동일	1.0	100,000				
2	종합설계 00역무 도면 작성	유사	0.7	7,000,000				
3	종합설계 00역무 도면 작성	유사	0.7	5000,000				

※ 수행실적은 도급수행실적으로 한정(파견근로실적 불인정)

첨부서류 : 발주처가 확인하고 발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다만, 관계기관 또는 발주처별 실적증명서 양식이 다른 경우에는 그에 따름)

[별지 제7호]

품질활동 능력 현황

1. 품질조직 및 인력

품질조직 및 편제	품질관리 인원 구성비	품질 인원 자격부여 현황
회사 조직도 및 조직별 인원 현황 첨부	품질인원/총원	- 품질감사자 : 명 - 시험 및 검사 : 명

※ 첨부 : 품질인원 자격부여 목록 및 자격평가 기록

2. 품질시스템 수립 현황

품질시스템 운영 여부	YES ☐ NO ☐	도입일자	
적용 품질시스템 기준	☐ ASME NQA-1 ☐ KEPIC ☐ ISO 9001 ☐ 기 타()		
최근 2년간 품질감사 수검 실적	감사조직(또는 기관)	감사일자	비 고
있음 ☐ 없음 ☐			

※ 첨부 : 품질보증계획서, 품질감사 수검관련 기록(감사보고서 등)

3. 업무공정도/업무표준서/기타 품질관련절차서(지침서) 보유 현황

순번	명 칭	절차번호	작성일		운영부서
			최 초	최근개정	

※ 첨부 : 표준절차서 목록 등

4. 품질체제 인증서 보유 현황

인증서 명칭	인증기관	유효기간	인증대상업무	인증된 주소지

※ 첨부 : 인증서 사본

5. 대내외 교육실적(최근 2년간)

■ 대내 교육실적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 고

※ 첨 부 : 대내 교육관련 증빙기록 사본

■ 대외 교육실적

교육과정	교육과정명	교육일정	인 원	비 고

※ 첨 부 : 대외 교육관련 증빙기록 사본

6. 기타사항

위 1~5번 사항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품질평가에서 최대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타 품질관리 관련내용 반드시 기재 요함.

7. 기타 일반현황

○ 국내 주요업체 및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 현황
○ 전산 PROGRAM 보유 현황
○ 제반 절차서 보유 및 활용 현황
○ 기 타

[별지 제8호]

협력업체 추천서			
1. 추천업체 개요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 개시일	
소재지		전 화 번 호	
주요사업 내 용	(별지작성 가능)		
2. 기본자격요건 구비여부 (해당사항에 ✓표 및 증빙서류 첨부)			
①중소기업 여부 : (0, X)	②신용평가등급 BB이상 : (0, X)	③협력분야별 면허요건 충족여부 (충족, 미흡)	
3. 추천사유			
가. 업체의 기술능력(별지 작성가능)			
나. 업체의 예상 활용도 및 추천사유			
다. 특기사항(기본자격요건 미비시 추천사유 등)			
위 업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회사 00분야 협력업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 처장(실장/사업책임자) 성명 : ① 소관부서 본부장 : 성명 : ① (계 약 실 장) 귀하			

붙임 4

설계엔지니어링부문 분야별 문의담당직원

1. 공통 활용분야

기술분야	협력분야	소관부서	담당직원	문의전화번호
품 질	품질검사	품질안전환경처	이 정 차장	054-421-7849
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원)사업관리기술그룹	이제성 부장	054-421-5831
정 보	정보기술	정보보안전략실(보안IT기획팀)	박호수 차장	054-421-3404

2. 원자력 활용분야

기술분야	협력분야	소관부서	담당직원	문의전화번호
원 자 력	원자력발전	원자력기술그룹	배영직 부장	054-421-3475
기 계	기계설계	원)기계기술그룹	김창남 부장	054-421-3497
	소방설비		박신영 부장	054-421-3514
배 관	배관설계	원)배관기술그룹	성희민 부장	054-421-6590
전 기	전기설계	원)전기기술그룹	이건호 부장	054-421-7433
계 측	계측제어	원)계측제어기술그룹	임재현 차장	054-421-7597
건 축	건축설계	원)토목건축기술그룹	박광련 부장	054-421-6167
토 목	토목구조	원)토목건축기술그룹	박광련 부장	054-421-6167
	육상측량			
	수로측량			
	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항만 및 해안			

3. 원자로 활용분야

기술분야	협력분야	소관부서	담당직원	문의전화번호
기 계	기계설계	기계설계그룹	황현희 차장	042-868-4360
계 측	원전 계측제어	계측제어설계그룹	임정현 차장	042-868-4124

4. 플랜트 활용분야

기술분야	협력분야	소관부서	담당직원	문의전화번호
기 계	기계설계	에)기계배관기술그룹	노지현 과장	054-421-3697
	공기조화 및 냉난방 설계		김동규 과장	054-421-7011
	소방설비		위대한 대리	054-421-7042
배 관	배관설계	에)기계배관기술그룹	김태영 차장	054-421-7214
전 기	전기설계	에)전기계측기술그룹	황의정 부장	054-421-7623
계 측	계측제어	에)전기계측기술그룹	이존수 부장	054-421-7732
건 축	건축설계	에)토목건축기술그룹	김용하 부장	054-421-6344
토 목	토목구조	에)토목건축기술그룹	조진욱 부장	054-421-6329
	육상측량		이충현 차장	054-421-6278
	수로측량		전철규 과장	054-421-6295
	도로 및 공항		지상욱 부장	054-421-6357
	토질 및 기초		맹창환 부장	054-421-6277
	지질 및 지반		백승경 차장	054-421-3970
	항만 및 해안		유광훈 부장	054-421-6292
	상하수도		김선기 차장	054-421-6766
환 경	환경현황조사	에)신재생환경기술그룹	박성우 부장	054-421-7304
	해 양		류준용 차장	054-421-7335
	환경 및 화학설비설계		이영일 부장	054-421-7305